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83호 2013. 9.30 (월요일)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611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
- 하동군 공고 제2013-612호 하동군 신조공인 공고 9
- 하동군 공고 제2013-613호 하동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10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 동 군 공 보

(2) 제 383 호

하동군 공고 제2013- 611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삼화 에코하우스는 농촌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생태체험, 방문자 숙박 장소 활용과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을 연계한 친환경 생활공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시설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시설의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사용료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제9조)
 -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시설사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녹색환경과, 전화055-880-2577, FAX 055-880-2569, e-mail:mjkim65@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이하 “에코하우스”라 한다)는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21-2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에코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 및 생태체험장
2. 각종 워크숍 등 회의 장소
3. 방문객의 숙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에코하우스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재위탁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6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7조(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가.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체행사
 -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
4.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시설물을 훼손·망실하는 행위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 호, 2013.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에코하우스 시설 사용료

(제7조)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주중	주말	
숙박	본관동 (단체 숙박)	· 20~30명/1일	90,000	100,000	
	숙박동 (방 2, 거실 등)	· 8~10명/1일	70,000	80,000	
	숙박동 (방 1, 주방)	· 4명/1일	30,000	40,000	
다목적실		· 숙박시설 사용시: 사용료의 50%감면	4시간 미만	1일	
			80,000	100,000	
운동장		· 숙박시설 미 사용시	50,000	50,000	

※ 기타사항

-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주말 : 금·토·공휴일
- 1일(박): 당일14시에서 다음날 12시 기준
- 숙박의 경우 기준 초과시 추가 : 5,000원/1명

【별표 2】

에코하우스 사용료 반환기준
(제9조)

구 분	대상 및 반환기준	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하 동 군 공 보

(8) 제 383 호

【별지 제1호 서식】

일련번호 :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명(단체)			전화번호			
	주 소						
사용목적 및 행사내용	목 적						
	행사내용 (참여인원 등)						
사용 기간	20 . . . ~ 20 . . . (박 일)						
사용 시설							
사 용 료 (감면금액)	계	원					
기타사항							

하동군 삼화에코하우스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

일련번호:				시설 사용(변경) 허가 통지서			
사 용 자	성 명(단체)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용 기 간	20 . . . ~ 20 . . .						
사 용 료 (감면금액)	원정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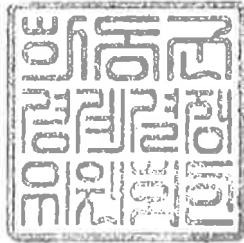
하동군 공고 제2013 -62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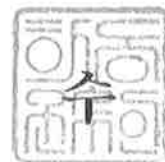
1. 공인 사용일 : 2013. 10. 2
2. 신조개각사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청인 등록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경계 결정위원회인	한글전서체 3.6cm 정사각형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3. 10. 2(공고 후)

2013년 10월 2일

하 동 군



하 동 군 공 보

(10) 제 38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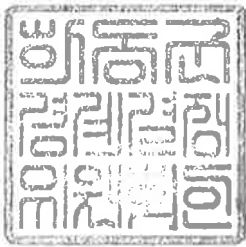
하동군 공고 제2013-63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7조(공인등록) 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 공인등록을
동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개시일 : 2013. 10. 2
2.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사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청인 등록
3. 전자이미지공인 내역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전자이미지 공인	하동군경계결정 위원회인	한글전서체 3.6cm 정사각형		

2013년 10월 2일

하 동 군

